

# 대한민국 혼합형 참심제 도입 제안서 및 법률안

## 제1부: 대한민국 혼합형 참심제 도입 제안서

### I. 서론: 시민 참여를 통한 사법 신뢰 제고

#### 가. 한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

현대 한국 사법부는 국민적 신뢰 확보 및 사회적 가치와의 괴리감 해소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정 사법 관계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존재하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고려할 때,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절차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법정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지만, 현재 한국의 형사재판은 전적으로 직업 법관의 손에 맡겨져 있어 국민의 목소리가 재판 과정에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사법부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즉 시민 참여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 결정의 수용성과 직결되며, 이는 곧 법치주의의 실현과 안정적인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이 됩니다.

#### 나.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시민 참여의 민주적 당위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사법권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법률 전문가인 직업 법관만이 재판을 담당하는 시스템은 국민을 사법 서비스의 객체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은 국민이 사법 절차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사법 정의 실현 과정에 대한 국민적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사법 절차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이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오랜 시민 참여 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사례는 사법 과정에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연방헌법이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by Jury)를 명시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참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다. 균형 잡힌 해결책으로서의 혼합형 참심제 제안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 사법 현실에 가장 적합한 시민 참여 모델로서 '혼합형 참심제(混合型

參審制)' 도입을 제안합니다. 혼합형 참심제는 직업 법관과 법률 비전문가인 시민 참심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사실인정, 법률 적용, 양형 결정 등 재판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평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델은 직업 법관의 법률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법 적용 능력, 그리고 시민 참심원이 대변하는 다양한 사회적 시각, 건전한 상식, 경험적 지혜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순수 배심제(시민이 사실인정만 담당)나 전통적인 대륙식 참심제(직업 법관의 영향력이 과도할 우려)와 비교할 때, 혼합형 참심제는 한국의 법체계와 사법 문화에 보다 부합하면서도 시민 참여의 실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 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높습니다.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참심법관'의 자격 요건, 선임 절차,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참심법관 역시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관'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헌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 II. 사법 정의 실현에 있어 시민 참여에 대한 국제적 동향

### 가. 비교 개관: 시민 참여 사법제도의 유형

#### 1. 배심제 (영미법계)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배심제는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 문제에 대한 유·무죄 평결(verdict)을 내리고, 직업 법관은 법률문제 판단, 소송 지휘, 양형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 선정은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 방식을 따르며, 평결은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심제의 강점은 사실인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참여 전통을 구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감정적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 법률 적용의 어려움, 재판의 비효율성 및 높은 비용, 사실과 법률문제의 인위적 분리 가능성 등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 2. 참심제 (대륙법계)

독일(Schöffen), 스웨덴(nämndemän), 핀란드(lautamiehet)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한 참심제는 직업 법관과 일반 시민(참심원)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양형 결정 모두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혼합 재판부(mixed tribunal) 모델입니다. 참심원 선정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한데, 스웨덴의 경우 정당 추천 방식이 비판받고 있으며, 독일은 지방 의회 추천 목록 기반 선출 방식 등을 사용합니다. 핀란드 역시 지방 의회 선출 방식을 따릅니다. 참심제의 장점은 직업 법관의 전문성과 시민의 상식·가치관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배심제에 비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직업 법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참심원의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될 위험, 참심원 선정 과정에서의 편향성 문제(특히 스웨덴 사례), 참

심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요성 등이 약점으로 거론됩니다.

### 3. 혼합형/하이브리드 시스템

프랑스의 중죄법원(Cour d'Assises), 일본의 재판원(Saiban-in) 제도, 그리고 특정 유형의 사건에 따라 배심제와 참심제를 병용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혼합형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프랑스 중죄법원은 3명의 직업 법관과 9명의 시민 배심원(juré, 실질적으로 참심원 역할)이 함께 사실, 법률, 양형을 결정합니다. 일본 재판원 제도는 3명의 직업 법관과 6명의 재판원(무작위 선발)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배심제와 참심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혼합형 시스템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각국의 법률 전통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직업 법관과 시민 대표가 함께 평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양 제도의 조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 나. 실무적 교훈: 각 제도의 강점과 약점

- 정당성 및 국민 신뢰: 시민 참여는 일반적으로 사법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참심원/배심원의 선정 과정은 제도의 정당성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웨덴의 정당 추천 방식은 편향성 논란을 야기하며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자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보장되지 않고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면, 신뢰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재판의 질: 시민 참여가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지속됩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건전한 상식', 다양한 삶의 경험, 사회적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법률 지식 부족, 감정적 판단이나 편견 개입 가능성, 언론 등 외부 영향에 대한 취약성, 복잡한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됩니다. 시민 참여자와 직업 법관의 판단 정확성을 비교한 연구들은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효율성 및 비용: 배심제는 배심원 선정 절차의 복잡성, 상세한 법률 설명의 필요성, 평결 불일치(hung jury) 가능성 등으로 인해 참심제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합형 시스템은 이 두 제도 사이에서 효율성과 참여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 대표성: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든, 참여 시민 구성의 인구통계학적, 이념적 대표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스웨덴의 정당 추천 방식은 대표성 왜곡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작위 선발 방식(미국 배심제, 일본 재판원 제도)은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향하지만, 특정 집단의 배제, 낮은 참여율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영향력의 역학 관계: 혼합 재판부에서는 직업 법관과 시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 법관의 전문성과 경험은 평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여 시민 참여자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위험은 재판부 구성(예: 시민 참여자 다수),

동등한 투표권 보장, 명확한 절차적 역할 규정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다양한 참심제 국가에서의 경험은 시민 참여의 이상과 직업 법관 주도 또는 절차적 어려움이라는 현실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시민 참여자를 재판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혼합 재판부 내에서 시민 참여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설계가 시민 참여 목표 달성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 표는 주요 국가의 시민 참여 사법제도 특징을 요약하여 비교합니다.

표 1: 주요 국가 시민 참여 사법제도 비교 개관

국가/ 제도	유형	선정 방식	대상 사건 범위	재판부 구성 (직업/시민)	시민 역할 (사실/법 률/양형)	평결방식	주요 강점	주요 약점
한국 (제안)	혼합형 참심제	무작위 추첨 + 심사	중대 형사사건 (구체화 필요)	예: 3명 / 6명	사실 + 법률 + 양형	특별다수결 (구체화 필요)	균형성, 실현 가능성	교육 / 통합 필요
독일 (Schöffen)	참심제	지방 추천 목록/ 선출	형사, 상사, 노동 등	다양 (예: 1/2, 3/2)	사실 + 법률 + 양형	2/3 다수결	전문성 / 이해관계 반영	직업 관주도 위험
스웨덴 (Nämndemän)	참심제	정당 추천	형사 (1심/항소심), 행정	1심: 1명 / 3명, 항소심: 3명 / 2명	사실 + 법률 + 양형	단순다수결 (1심)	민주적 전통	정치적 편향성, 대표성 문제
핀란드 (Lautamiehet)	참심제	지방의회 선출	형사 (1심 - 중대)	1명 / 2명	사실 + 법률 + 양형	단순다수결 (시민 우위 가능)	민주적 전통	활용 감소, 법관 비판적 시각
프랑스 (Cour d'Assises)	혼합형 (배심/참심)	무작위 추첨 + 심사	중대 형사사건 (중죄)	3명 / 9명	사실 + 법률 + 양형	특별다수결	강한 시민 참여	복잡성
일본 (Saiban-in)	혼합형 참심제	무작위 추첨 + 심사	중대 형사사건	표준: 3명 / 6명	사실 + 법률 + 양형	다수결 (각 그룹 1명 이상 포함)	현대적 설계, 국민 참여 유도	시민 부담, 평의 질우려
덴마크	병용제 (배심/)	정당 추천	배심: 중대 형사 (> 4년, )	배심: 3명 / 12명, 참심(1)	배심: 사실만 (특)	배심: 특별다수 결 (유죄)	양제도 병용, 논란,	배심제 논란,

	참심)	기반	부인, 1심 고법), 참심: 덜 중대 형사 (<=4년, 부인, 1심 지법 및 항소심)	심): 1명 / 2명, 참심(항소심): 3명 / 3명	별 평결), 참심: 사실+법률+양형	8+), 참심(1심): 단순다수결, 참심(항소심): 특별다수결(불리 4+)	이중 보장 ' ( 배심)	사실상 1심(배심), 정당 기반 선정
노르웨이	병용제 (배심/ 참심)	위원회 선정 (정당 영향)	참심: 모든 형사 1심(지법), 덜 중대 형사 항소심 (<6년), 배심: 중대 형사 항소심 (> 6년, 부인)	참심(1심): 1명 / 2명 (복잡 시 2/3), 참심(항소심): 3명 / 4명, 배심 (항소심): 3명 / 10명	참심: 사실+법률+양형, 배심: 사실만 (유무죄)	참심 (1심): 단순다수결, 참심 (항소심): 특별다수결 (유죄 5+), 배심: 특별다수결 (유죄 7+)	양 제도 병용, 사실심 항소 보장	배심제 비판, 정당 영향 선정
미국/ 영국 (Jury)	배심제	무작위 추첨	형사 (중대), 민사	법관 + 12명 (표준)	사실만	만장일치 (요구되는 경우 많음)	강한 시민 통제 (사실)	비용, 비효율성, 법률적 용어 려움

이 표는 여러 시스템의 핵심 특징을 구조화하여 병렬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안된 한국 모델을 포함함으로써, 이 모델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위치하며 그 특징들이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정당화되거나 차별화되는지를 입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 한국적 맥락에서 혼합형 시스템 채택의 타당성

한국의 법체계와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혼합형 참심제가 가장 적합한 시민 참여 모델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심제의 한계: 순수 배심제는 강력한 민주적 이상을 담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송 절차(증거법, 재판 구조 등 대륙법계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상당한 비용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전통적 참심제의 위험: 직업 법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는 전통적인 참심제 모델은 시민 참여의 실질성을 확보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핀란드 등에서 제기되는 비판점들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 혼합형 참심제의 장점: 제안하는 혼합형 참심제(프랑스/일본 모델에서 영감을 얻되 한국 현

실에 맞게 조정 1)는 기존 전문 사법 시스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시민 참여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직업 법관의 전문성과 시민의 다양한 시각을 평의 과정에서 융합할 수 있으며, 배심제와 같은 급진적인 절차 변경 없이 도입 가능합니다. 특히, 재판부 구성(예: 참심원 다수) 및 평결 방식 설계를 통해 시민 참여의 실질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당 추천 방식은 시민 참여자의 선정 방식이 제도의 성격과 정당성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반례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를 통제하는 방식이 인구통계학적 왜곡(고령, 원주민, 특정 정당 소속 편중)을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인과 관계를 시사합니다. 따라서 한국형 모델 제안 시, 스웨덴 사례를 교훈 삼아 정당 추천 방식을 명확히 배제하고, 광범위한 대표성과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무작위 또는 준-무작위 선발 방식을 강력히 옹호해야 합니다. 또한, 영미식 배심제와 달리 유럽 대륙 및 일본의 혼합 재판부가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까지 포함한 재판 전체 과정에 시민 참여를 통합하는 경향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유죄 여부 결정과 형벌 부과 모두에 시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국제적 합의(영미법계 제외)를 시사합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한국 모델 역시 이러한 통합적 역할을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양형 결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 III. 제안하는 한국형 혼합형 참심제의 기본 골격

#### 가. 핵심 목표

- 주요 목표: 사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
- 부수적 목표: 사법 투명성 증진, 시민의 법 이해도 및 법치주의 의식 함양, 다양한 사회적 관점('건전한 상식', 생활 경험)을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반영, 판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증대.

#### 나. 적용 범위

- 법원: 초기에는 제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地方法院)에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시민 참여가 주로 1심에서 시작되는 경향과 일치합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후, 항소심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심에서는 시민 참여자의 역할이 축소되는 해외 사례(예: 스웨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유형: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대 형사사건에 집중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 제도가 종종 중대 범죄에 적용되는 국제적 관행과 부합합니다. 대상 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예: 법정형 상한, 특정 범죄 유형)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중한 중대범죄', 예를 들어 '법정합의부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에 부적합한 사건(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 범죄, 국가 안보 관련 사건)은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독일 등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참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초기에는 일반 시민 참심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민사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는 제외하되, 독일 및 EU 국가들의 민사 참심원 제도를 참고하여 향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중대 형사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공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이지만, 특정 사건 유형을 제외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 설정 시 공익, 사건의 복잡성, 자원 제약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더 넓거나 좁은 적용 범위에 대한 잠재적 주장을 염두에 둔 정당화 논리가 필요합니다.

#### 다. 재판부 구성

- 직업 법관 대 참심원의 비율: 시민 참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장하고 직업 법관 주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참심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표준 모델 1과 유사하게 직업 법관 3명과 참심원 6명, 또는 프랑스 모델 1처럼 직업 법관 3명과 참심원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평의의 효율성과 대표성이 있는 의견 수렴 간의 균형점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1심(1명/3명) 등 다른 국가의 구성 비율도 비교 대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혼합 재판부에서 직업 법관이 평의를 주도하는 경향이 관찰되므로, 단순히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심원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구조는, 이론적으로 직업 법관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참심원들이 합의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구조적인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비교 분석에서 확인된 주요 약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의미 있는 시민 참여라는 목표를 강화하는 설계적 선택입니다.

- 예비/보충 참심원: 장기 재판 중 참심원의 결격 또는 유고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 또는 보충 참심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라. 참심원의 권한과 기능

- 동등한 참여 원칙: 참심원은 직업 법관과 함께 증거 심리, 사실 및 법률 적용(직업 법관의 설명과 안내하에), 유·무죄 판단, 양형 결정 등 재판의 실질적인 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집니다.

- 동등한 평결권: 평의 시 참심원은 직업 법관과 동등한 1표의 평결권을 행사합니다.

- 재판장의 역할 명확화: 재판장(주심 직업 법관)은 소송 절차를 지휘하고, 참심원에게 법률 개념을 설명하며, 평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평의의 내용에 대해 결정적인 투표권(casting vote)을 갖거나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기각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관찰되는 직업 법관 주도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IV. 헌법적 합치성 확보 방안

####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와의 조화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 쟁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률 비전문가인 시민 참심원의 재판 참여가 양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즉, 시민 참심원을 헌법상의 '법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핵심 논거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 법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인 자격과 범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나. 법관 자격의 법률 유보 원칙 (헌법 제101조 제3항)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법관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특정 유형의 재판(여기서는 혼합형 참심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법관(參審法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 참여자의 자격, 선임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원조직법이 직업 법관의 임용 자격(제42조)과 결격 사유(제43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해석의 핵심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 개념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제101조 제3항에 따라 입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이 제안은 이러한 해석을 강력하게 제시하며, 입법부의 사법 역할 정의에 대한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헌법 이론이나 학술적 논의를 참조하여 위헌 도전을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 다. '참심법관'을 법률에 의한 재판 참여자로 정의

새로 제정될 법률에서 '참심법관'을 해당 법률에 따라 선정되고 활동하는 동안, 그들이 담당하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직업 법관과 함께 사법권을 행사하는 임시적 또는 특수 목적의 재판 참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특정 자격을 가진 비직업 법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기존 사례와 유사한 법적 구조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참심법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관'이라는 단어를 포함함으로써, 법률이 이들을 제101조 제3항에 따라 제27조 제1항을 만족시키는 '법관'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언어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 라.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선례 및 유추 해석

한국 내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률 전문가의 참여 사례가 있다면, 이를 입법을 통해 재판 또는 심판 참여자의 역할을 정의한 유사 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과 공존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단, 직접적인 헌법 조항 비교는 신중해야 하며, 핵심은 입법적 정의의 원칙입니다). 궁극적으로, 혼합형 참심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 국회의 입법 활동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표는 제안된 혼합형 참심제와 관련된 주요 헌법 조항 및 해석 방향을 요약합니다.

표 2: 헌법적 합치성 분석 요약

헌법 조항	잠재적 쟁점	제안된 해석/논거	뒷받침 근거
제27조 제1항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시민 참심원이 '자격 있는 법관'인가?	'법관'의 범위는 법률로 정의 가능하며, 참심법관은 제정될 법률에 의해 특정 사건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음.	헌법 제101조 제3항; 입법 선례 (법원조직법); 국제적 관행.
제101조 제3항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함)	이 조항이 새로운 유형의 법관 창설을 허용하는가?	그렇다. 입법부에 사법적 역할과 자격을 정의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참심법관'과 같은 임시/특별 법관 포함 가능.	조문 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 형성의 자유 원칙.
제103조 (법관의 독립)	참심법관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제정될 법률에서 독립성, 공정성, 부당한 (특히 정치적 등)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선발 절차 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함.	법률안 내 법적 보장 (선발, 선서, 보호 조항 등).

이 표는 헌법적 우려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법리(특히 제101조 제3항)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입법자들이 헌법 개정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를 쉽게 파악하도록 돋습니다.

## V. 제도의 운영: 선발, 교육 및 지원 체계

### 가. 참심법관의 자격 및 선발

• 자격 기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성인 나이(예: 만 25세 이상), 관할 법원 구역 내 거주, 기본적인 읽기·쓰기·이해 능력. 스웨덴 법률의 시민권, 연령, 거주지, 건전한 판단력, 법 준수 요건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결격 기준: 배제 사유를 명확히 목록화합니다: 법률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고위 공직자, 중대한 범죄 전과자, 심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자 (기피/회피 제도 참조). 직업에 따른 배제는 사법 행정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배제는 피해야 합니다.

• 선발 절차: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추첨 방식을 핵심적인 선발 방법으로 강

력히 권고합니다. 이는 포괄적인 명부(예: 선거인 명부, 주민등록 명부)를 기반으로 하며, 스웨덴의 정당 추천 방식과 같은 부정적 사례를 명백히 배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작위 추출 → ② 자격/결격/회피 사유 확인을 위한 설문 조사 → ③ 법원 소환 → ④ 법정에서의 최종 선정(검사/변호인에게 제한된 수의 무이유 기피 및 이유부 기피 허용, 미국/영국식 선정 절차 요소를 참심제에 맞게 변용).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작위 선발은 구조적 편향을 최소화하지만, 개인적 편견이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배심제 선정 시 활용되는 기피 제도(이유부/무이유 기피)와 독일/스웨덴의 자격/결격 규정을 결합한 다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작위 추출 → 객관적 자격 심사 → 법정에서의 제한적 당사자 참여 아래 선정(기피 제도 활용). 이는 대표성과 특정 사건에 대한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입니다.

• 임기: 독일이나 스웨덴과 달리, 일본 및 배심제 모델과 유사하게 사건별 선임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 기회를 극대화하고, 개인의 부담을 줄이며, 참심원이 과도하게 제도화되거나 '준전문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기간(예: X년) 동안 재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둡니다. 고정 임기는 참심원이 경험을 쌓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핀란드 및 일반적 비판에서 지적되듯 '시민'의 관점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광범위한 국민 신뢰와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건별 선임 방식이 더 적합하며, 이는 사건마다 효과적인 표준화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 나. 의무 교육 및 윤리 강령

• 의무 교육: 선발된 참심원은 재판 참여 전에 의무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법 원칙, 법정 절차, 참여자 역할, 증거 평가 방법, 평의 윤리, 비밀 유지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하며, 비법률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의 불충분한 교육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은 참심원을 아마추어 법률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절차 이해, 증거의 논리적 평가, 존중하는 평의, 비밀 유지 등). 역할극, 사례 연구, 기본 개념(입증 책임, 합리적 의심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 윤리 강령: 공정성 유지, 비밀 염수(특히 평의 내용에 대한 절대적 비밀 유지, 외부 영향(언론, 사적 조사 등) 배제, 재판 및 평의 중 적절한 행동 규범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윤리 강령 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 보상, 지원 및 법적 보호

• 공정한 보상: 직무 수행 시간(일당) 및 필요 경비(교통비, 필요한 경우 육아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참심원 참여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상 수준은 시민적 의무를 반영하되, 일상생활의 지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 행정 및 정서적 지원: 명확한 안내, 편안한 시설 제공 등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충격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을 다룬 참심원들을 위한 상담 지원 등 정서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 참심원 임무 수행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협박, 보복 등으로부터 참심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심원의 개인 정보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 VI. 혼합 재판부를 위한 법정 절차 조정

### 가. 공판 전 준비 및 증거 개시

- 참심원이 참여하기 전에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판 전 준비 절차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심원의 이해를 돋기 위함입니다. 당사자 간 충분한 증거 개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참심원에게는 사건의 쟁점과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해야 합니다. 단, 너무 이르거나 방대한 자료 제공은 예단 형성이나 부담 가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자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 나. 공판 진행: 이해 가능성 및 효과적인 평의 보장

- 공판은 참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재판장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sup>1</sup> 절차는 명료성과 증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제도의 성공은 재판 절차를 시민 참여자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크게 좌우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변론 방식과 판사의 소송 지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참심원에게 기존의 법률 논쟁과 절차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문 법정에서도 통역이나 쉬운 언어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일본 제도에 대한 1의 설명은 이해가능한 절차와 집중 심리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참심원 도입과 함께 절차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더 명확한 언어 사용, 구조화된 증거 제시, 판사의 적극적인 설명, 그리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증거 규칙 또는 절차의 개정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절차 조정 실패는 시민 참여를 비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참심원의 집중력 유지와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가능한 한 집중 심리/연일 개정(連日 開廷)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sup>1</sup> 불필요하게 긴 휴정은 피해야 합니다. 스웨덴 법률의 효율성 추구 조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참심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 중 질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예: 재판장을 통해 질문). 이는 독일 등에서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평의 절차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토론을 촉진하고, 참심원의 의견이 경청 되도록 보장하며, 관련 법률 기준을 설명하되, 평의를 주도하거나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 다. 평결 절차 및 의결 정족수

- 평의 절차: 사실인정, 법률 적용, 유·무죄 판단, 양형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직업 법관과 참심원이 함께 평의함을 명시합니다.
- 의결 정족수: 유죄 판결이나 중형 선고를 위해서는 직업 법관과 참심원 양측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는 특별다수결 방식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는 단순 다수결이지만 유죄 평결을 위해서는 최소 각 그룹(직업 법관, 참심원)에서 1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식(일본 모델과 유사) 또는 더 높은 기준(예: 독일의 2/3 다수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 메커니즘은 제도의 목표(예: 시민 영향력 보장, 피고인 보호)를 운영 규칙으로 직접 변환하는 중요한 설계적 선택입니다. 이는 직업 법관이나 시민 참심원 어느 한 그룹만의 합의에 기반한 결과를 구조적으로 방지합니다. 일본 모델처럼 유죄 평결에 각 그룹에서 최소 1표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경험의 경계를 넘어선 일정 수준의 합의를 보장합니다. 이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재판부의 '흔합적' 성격을 작동시키고, 한 그룹에 의해 주도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평결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 원칙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다수결(스웨덴 1심)이나 만장일치(배심제) 방식과 차별화됩니다.
- 판결 이유 명시: 배심제와 달리, 혼합 재판부의 판결에도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판결 이유는 공동 평의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 기재를 허용합니다.

#### 라. 상소심 절차

- 혼합 재판부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상소심의 심리 범위를 정의합니다. 상소심은 법률적 오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혼합 재판부의 사실인정 존중), 아니면 더 광범위한 재심리를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참심제 국가에서도 상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기존의 상소 이유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 한국의 상소 구조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혼합 재판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소심(전적으로 직업 법관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이 혼합 재판부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어떤 기준(예: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VII. 기대 효과 및 실행 전략

#### 가. 국민 신뢰 강화 및 사법 투명성 증진

- 시민의 직접 참여는 사법 과정의 신비주의를 벗기고, 논란이 있는 판결조차도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었다는 인식을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참심원이 법정에서의 경험과 통찰을 지역 사회로 전파하는 '창문' 역할을 수행하여 사법과 사회 간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는 개별 참심원을 넘어섭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동체 내에서 공유함에 따라, 이는 점진적으로 일반 대중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가치가 단지 생산된 판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더 넓은 시민적 영향력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안서는 이러한 장기적 이점을 민주 시민 참여에 대한 투자로 제시하며 강조해야 합니다.

#### 나. 법률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 증진

- 참여 시민에 대한 교육 효과를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다. 재판 결과의 질적 향상 가능성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직업 법관의 법률 분석 능력과 다양한 시민 참심원의 관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보다 섬세하고 맥락을 고려하며 사회적으로 공감받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 라. 단계적 실행 계획 및 자원 고려

-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절차를 시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부 지방법원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문화적 변화를 관리하고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시민 참여 제도의 도입은 판사, 변호사, 법원 직원, 일반 대중 모두에게 큰 변화를 수반하므로 위험이 따릅니다. 시범 사업은 선정 방법, 교육 효과, 절차 조정, 비용 영향 등을 통제된 환경에서 검증하여, 잠재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전국적 시행 전에 성공적인 장기 정착 가능성을 높입니다.
- 필요 자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참심원 보상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선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경우에 따라 법정 시설 개선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배심제에 대해 제기되는 높은 비용 우려에 대응하여, 혼합형 참심제 모델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주요 실행 단계를 제시합니다: 법률 제정, 선발 인프라 구축, 교육 커리큘럼 개발, 혼합 재판부 운영에 대한 법관 교육,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 VIII. 입법 제안

제안된 혼합형 참심제의 도입 이유와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국회에 첨부된 '혼합형 참심제 운용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심의·의결하여 한국 사법 시스템에 혼합형 참심제를 도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개혁이 한국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제2부: 혼합형 참심제 운용에 관한 법률안 (가칭)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 형사재판에 국민이 참심법관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며, 재판 결과에 법적 원리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혼합재판부"란 직업법관과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참심법관으로 구성되어 대상 사건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2. "참심법관(參審法官)"이란 이 법에 따라 선정되어 혼합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을 말한다.
  3. "직업법관"이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임명된 판사를 말한다.
  4. "대상 사건"이란 이 법 제3조에 따라 혼합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5. "평의"란 혼합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모여 사건의 사실인정, 법령 적용,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제1심 형사 공판 절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 (법정합의부 관할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기타 구체적인 범죄 유형 또는 법정형 기준 추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상 사건에서 제외한다.
      4. 소년보호사건
      5.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6.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일부 (구체화 필요)
      7. 참심법관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현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예: 조직범죄)
      8. (기타 제외 사건 명시)③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피고인의 자백 여부는 대상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참여의 원칙) 참심법관은 대상 사건의 심리 및 평의에 직업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표결권을 행사한다.

## 제2장 혼합재판부

- 제5조 (구성) ① 혼합재판부는 3명의 직업법관과 6명의 참심법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의 결정으로 참심법관의 수를 9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직업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판부는 참심법관의 질병, 사고, 기피 등에 대비하여 1명 이상 3명 이하의 예비참심법관을 둘 수 있다. 예비참심법관은 재판 절차에 참관하며, 참심법관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직무를 승계한다.
- 제6조 (참심법관의 권한과 의무) ① 참심법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대상 사건의 모든 공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
  2. 소송 기록 및 증거를 열람할 권리
  3.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 피고인 등에게 질문할 권리 (제23조 참조)
  4. 평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5. 사실인정, 법령 적용,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표결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표결권을 행사할 권리
  6.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7. 평의의 비밀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 (제16조 참조)
  8.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를 의무

- 제7조 (재판장의 역할) ① 재판장은 혼합재판부를 대표하고 공판 절차를 지휘하며 평의를 주재한다. ② 재판장은 참심법관이 사건 내용과 법령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평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참심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판장은 평의 결과를 반영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 제3장 참심법관의 선정 및 임기

- 제8조 (자격) 참심법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선정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일 것
  3. 관할 지방법원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4. 심신이 건강하여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5.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 제9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심법관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7.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조직법」상 법원공무원, 경찰청 직원, 교정 공무원, 보호관찰 공무원,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군인 및 군무원
8. 그밖에 직무의 성격상 참심법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10조 (선정 절차 - 후보자 예정자 명부 작성) ① 각 지방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구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법」 또는 「선거인명부 법」에 따른 명부 등을 활용하여 참심법관 후보자 예정자(이하 "후보자 예정자"라 한다)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② 후보자 예정자의 수는 다음 해에 예상되는 대상 사건 수, 선정 절차 진행 중 제외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지방법원장이 정한다. ③ 명단 작성 시 나이, 성별, 지역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선정 절차 - 질문표 발송 및 후보자 명부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후보자 예정자에게 참심법관의 자격, 결격 사유, 면제 사유, 기피 사유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문표를 발송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질문표 회신 내용 등을 심사하여 제8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13조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참심법관 후보자 명부(이하 "후보자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 제12조 (선정 절차 - 사건별 선정 기일 운영) ① 재판장은 대상 사건의 공판기일 전에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수의 참심법관 후보자(예비참심법관 후보자 포함)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선정기일에 소환한다. ② 선정기일에는 재판장, 검사, 변호인(피고인 포함)이 참석한다. ③ 재판장은 출석한 후보자에게 참심법관의 직무, 권한, 의무,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적으로 후보자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 절차에서 제외(이유부 기피)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자격이 없거나 제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2. 「형사소송법」 제17조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불공정한 판단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예: 4명)의 범위 내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선정 절차에서 제외(무이유 기피)할 수 있다. ⑦ 재판장은 기피되지 아니한 후보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필요한 수의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을 최종 선정한다.

• 제13조 (직무 수행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심법관 직무 수행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참심법관 또는 예비참심법관으로 선정되어 직무를 마친 사람
3. 학생 또는 군 복무 중인 사람(대체 복무 포함)
4. 중대한 질병, 상해 또는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5. 그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거나, 사업상 또는 가정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면제 신청 및 결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임기 및 재선정 제한) ①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의 임기는 담당하는 대상 사건의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참심법관 또는 예비참심법관으로 직무를 마친 사람은 그 직무를 마친 날부터 (예: 5년) 동안은 다시 참심법관 또는 예비참심법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제15조 (선서)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정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선서하여야 한다."본인은 참심법관(예비참심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평의의 비밀을 염수하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 염수히 선서합니다."

#### 제4장 참심법관의 권리, 의무 및 윤리

• 제16조 (독립성과 공정성) 참심법관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7조 (비밀 유지 의무) ①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은 평의 내용과 과정, 다른 재판부 구성원의 의견, 표결 결과 및 그 분포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의무는 직무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② 제1항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처벌한다.

• 제18조 (참여권) 참심법관은 이 법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 절차 및 평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장이나 다른 재판부 구성원은 참심법관의 정당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9조 (출석 및 직무 수행 의무)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 또는 평의에 불출석하거나 직무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여비 및 수당 등) ① 참심법관, 예비참심법관 및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에게 직무 수행 기간 중의 자녀 또는 노약자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해임) ① 법원은 참심법관 또는 예비참심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해임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의 법 또는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불공정한 직무 수행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해임 결정은 혼합재판부를 구성하는 직업법관 전원의 합의로 한다. ③ 해임 결정 전에 해당 참심법관 또는 예비참심법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장 공판 절차

- 제22조 (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대상 사건의 공판기일 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고, 참심법관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참심법관에게 설명할 법률 용어, 쟁점,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다.
- 제23조 (심리 진행) ① 재판장은 참심법관이 공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소송 지휘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공판은 집중 심리를 위해 가능한 한 연일 계속하여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심법관은 증인, 감정인, 피고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재판장은 질문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판단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참심법관이 질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 제24조 (평의) ① 증거조사와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평의를 개시한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재판장은 평의 시작 시 쟁점, 적용될 법령, 증거의 요지 등을 설명하고,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평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평의는 사실인정, 법령 적용, 유·무죄 판단, 양형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 (표결) ① 평의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한다. ② 표결 순서는 예비참심법관(참여한 경우), 참심법관(선정 순서 또는 연소자 순), 직업법관(배석판사, 재판장 순)으로 한다. ③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결정은 혼합재판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유죄 인정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찬성 외에 직업법관 1명 이상과 참심법관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을 따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⑤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직업법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한다.
- 제26조 (판결 선고 및 이유 명시) ① 재판장은 평의 결과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다. ② 판결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판결 이유는 혼합재판부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직업법관이 작성한다. ③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재판부 구성원은 판결서에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27조 (상소) ① 혼합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심은 사실오인,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심리한다. 상소심이 혼합재판부의 사실인정 판단을 심리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장 교육 및 지원

- 제28조 (참심법관 교육) ① 법원행정처장은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으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재판 참여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 내용에는 형사 절차 개요, 증거 판단의 기본 원칙, 참심법관의 역할과 책임, 평의 절차 및 윤리, 비밀 유지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 (지원) 법원은 참심법관 및 예비참심법관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자료 제공, 행정적 지원, 편의시설 제공 등 적절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심리적 상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7장 보호 및 별침

- 제30조 (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참심법관, 예비참심법관 또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고, 전보,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참심법관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한 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31조 (직무 관련 범죄 등) ① 참심법관 또는 예비참심법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참심법관, 예비참심법관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사건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참심법관, 예비참심법관 또는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참심법관, 예비참심법관 또는 후보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처벌한다.

- 제32조 (참심법관 등의 의무 위반) ① 참심법관, 예비참심법관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평의 포함)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결정으로 (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참심법관, 예비참심법관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17조 제1항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 (허위 진술 등) 참심법관 후보자가 선정 절차에서 질문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선정기일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결정으로 (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 제34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예: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5조 (경과 조치 및 시범 실시)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지방법원을 지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예: 3년)의 범위 내에서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다. 시범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대상 사건의 재판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개정 사항 명시)